

국제여객운송약관

2018년 11월 02일 발행



(Intentionally left blank)

개정 기록표

개정 번호	개정 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 부서
0	02-NOV-2018	최초	전략기획팀

유효 페이지 목록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기록표	0	02-NOV-2018
유효페이지목록	0	02-NOV-2018
목차	0	02-NOV-2018
제 1 조 정의		
1-1~40	0	02-NOV-2018
제 2 조 약관의 적용		
2-1	0	02-NOV-2018
2-2	0	02-NOV-2018
2-3	0	02-NOV-2018
2-4	0	02-NOV-2018
2-5	0	02-NOV-2018
2-6	0	02-NOV-2018
제 3 조 항공권		
3-1	0	02-NOV-2018
3-2	0	02-NOV-2018
3-3	0	02-NOV-2018
3-4	0	02-NOV-2018
3-5	0	02-NOV-2018
3-6	0	02-NOV-2018
제 4 조 도중체류		
4-1	0	02-NOV-2018
4-2	0	02-NOV-2018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5-1	0	02-NOV-2018
5-2	0	02-NOV-2018
5-3	0	02-NOV-2018
5-4	0	02-NOV-2018
9-11	0	02-NOV-2018

페이지	개정번호	개정일자
제 6 조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접속 불능		
6-1	0	02-NOV-2018
6-2	0	02-NOV-2018
제 7 조 예약		
7-1	0	02-NOV-2018
7-2	0	02-NOV-2018
7-3	0	02-NOV-2018
7-4	0	02-NOV-2018
7-5	0	02-NOV-2018
7-6	0	02-NOV-2018
7-7	0	02-NOV-2018
제 8 조 운송의 제한		
8-1	0	02-NOV-2018
8-2	0	02-NOV-2018
8-3	0	02-NOV-2018
8-4	0	02-NOV-2018
8-5	0	02-NOV-2018
제 9 조 수하물		
9-1	0	02-NOV-2018
9-2	0	02-NOV-2018
9-3	0	02-NOV-2018
9-4	0	02-NOV-2018
9-5	0	02-NOV-2018
9-6	0	02-NOV-2018
9-7	0	02-NOV-2018
9-8	0	02-NOV-2018
9-9	0	02-NOV-2018
9-10	0	02-NOV-2018
제 17 조 운송인의 책임		

국제여객운송약관

9-12	0	02-NOV-2018
9-13	0	02-NOV-2018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0-1	0	02-NOV-2018
10-2	0	02-NOV-2018
제 11 조 환불		
11-1	0	02-NOV-2018
11-2	0	02-NOV-2018
11-3	0	02-NOV-2018
11-4	0	02-NOV-2018
11-5	0	02-NOV-2018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12-1	0	02-NOV-2018
12-2	0	02-NOV-2018
제 13 조 지상운송 서비스		
13-1	0	02-NOV-2018
제 14 조 숙박 및 기내식		
14-1	0	02-NOV-2018
14-2	0	02-NOV-2018
14-3	0	02-NOV-2018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15-1	0	02-NOV-2018
제 16 조 출입국 소속		
16-1	0	02-NOV-2018
16-2	0	02-NOV-2018
16-3	0	02-NOV-2018
16-4	0	02-NOV-2018

17-1	0	02-NOV-2018
17-2	0	02-NOV-2018
17-3	0	02-NOV-2018
17-4	0	02-NOV-2018
제 18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8-1	0	02-NOV-2018
18-2	0	02-NOV-2018
제 19 조 법령 우선		
19-1	0	02-NOV-2018
제 20 조 수정 및 포기		
20-1	0	02-NOV-2018
제 21 조 약관의 정본		
21-1	0	02-NOV-2018
Approved by C.E.O		
		

목 차

제 1 조 정의	1
제 2 조 약관의 적용	5
1. 총칙	5
2. 적용	5
3. 무상 운송	5
4. 전세 운송 계약	5
5. 효력	5
6. 예고없는 변경	6
제 3 조 항공권	7
1. 총칙	7
2. 항공권의 유효성	7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8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사용	9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특이사례	10
6. 비 양도성	10
제 4 조 도중체류	12
1. 도중 체류의 허용	12
2. 도중 체류의 사전 조치	12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3
1. 적용 운임 및 요금	13
2. 미 공지 운임의 산출	13
3. 경로	13
4.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4
제 6 조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접속 불능	15
1. 여객 요청에 따른 변경	15
2.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15
제 7 조 예약	17
1. 총칙	17
2. 예약의 조건	17
3. 예약의 재확인	17
4. 통신비	17

5. 예약의 취소	18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18
7. 개인 정보	19
제 8 조 운송의 제한	20
1.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20
2. 유아의 운송	20
3. 운송거절, 예약취소 또는 강제하기	20
4. 조건부 운송 인수	21
5. 기내에서의 행위	22
6. 전자기기	22
7. 부정 탑승	23
제 9 조 수하물	24
1. 수하물의 운송	24
2. 수하물 내용조사	24
3.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24
4.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24
5. 기내 무료 휴대품	25
6. 초과수하물 요금	26
7. 초과수하물 요금의 환불	26
8. 특정 동물의 운송	26
9. 증가요금	27
10. 증가요금의 환불	27
11. 위탁수하물의 인도	27
12. 수하물표 분실	28
13. 미 인도 수하물 처분	28
제 10 조 항공편 스케줄 지연 및 취소	29
1. 스케줄	29
2. 취소	29
제 11 조 환불	31
1. 총칙	31
2. 통화	32
3.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환불	32
4.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32
5. 분실 항공권	33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35
1.	사전 취소	35
2.	예약 부도 수수료 징수	35
제 13 조	지상운송 서비스	36
제 14 조	숙박 및 기내식	37
1.	숙박	37
2.	기내식	37
3.	에어필립에 의한 알선	37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38
제 16 조	출입국 수속	39
1.	법령의 준수	39
2.	여권 및 사증	39
3.	세관 검사	39
4.	정부의 규정	40
제 17 조	운송인의 책임	41
1.	승계(연결) 운송인	41
2.	적용 법규	41
3.	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42
4.	제소 원인	44
제 18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45
1.	손해배상 청구기한	45
2.	제소 기한	45
제 19 조	법령 우선	46
제 20 조	수정 및 포기	46
제 21 조	약관의 정본	46

제 1 조 정 의

본 운송 약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어필립"이란 주식회사 에어필립을 말한다.
2.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 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말한다.
3. "운송"이란 수송과 동의어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운송을 말한다.
4.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과, 동 항공권에 의거하여 여객 또는 그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당해 항공운송에 관련되는 기타 서비스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것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을 포함한다.
5. "협약"이란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협약 (이하 "개정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협약"이라 칭함) 으로서 그 중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6. "협약에 정의된 것 이외의 국제운송"이란, 바르샤바협약 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또는 몬트리올협약에서 정의된 국제운송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운송으로서,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와 착륙지가 둘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말한다. 여기서 "국가"란 한 나라의 주권, 종주권, 위임통치, 권력 또는 신탁통치 하에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7. "태리프"란 에어필립이 여객 및 수하물의 국제운송에 적용하는 운임, 요율 및 요금과 동 운송에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말하며 이는 본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한다.
8. "항공권"이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에어필립 또는 에어필립이 지정한 대리인 (이하 "대리점"이라 칭함)에 의하여 발행된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수표" 또는 "전자항공권(ELECTRONIC TICKET)"을 의미하며, 계약 조건, 알림 및 항공권의 모든 쿠폰(탑승용 쿠폰 및 여객용 쿠폰 포함)을 포함한다.

9. "전자항공권"이란 항공사에 의해 또는 항공사를 대신해서 발행된 E-TICKET 여정/영수표 (ITINERARY/RECEIPT)를 말한다.
10. "E-TICKET 여정/영수표(ITINERARY/RECEIPT)"란 항공사가 전자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발행하는 승객성명, 항공편, 고지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말한다.
11. "탑승용 쿠폰"이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의 운송이 유효하게 이행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하며, 전자항공권인 경우, 전자쿠폰을 말한다.
12. "여객용 쿠폰"이란 여객항공권의 일부분으로 여객과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말한다.
13. "제 비용 청구서(MISCELLANEOUS CHARGES ORDER : 이하 "MCO"라 한다)"란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발행되는 증표로서 동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게 여객항공권의 발행 또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청하는 증표를 말하며, 전자 환경인 경우 "전자 제 비용 청구서(Electronic Miscellaneous Document : 이하"EMD"라 한다)"를 말한다.
14. "통상운임"이란 할인되지 않은 여객 운임을 말한다.
15. "특별운임"이란 통상운임 이외의 운임을 말한다. 동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한된 항공권 유효기간 또는 기타 특별한 조건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
16. "환불 위약금"이란 항공권 환불 시 당해 운임의 환불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17. "예약부도 수수료"란 여객이 확약한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까지 예약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18. "수하물"이란 여객이 자신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여객의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의미하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탁수하물 및 휴대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단, 동일한 품목을 다량 운송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하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19. "위탁수하물"이란 등록 수하물과 동의어로서 전적으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고 운송인이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한다.
20. "휴대 수하물"이란 여객 자신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운송, 보관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21. "초과수하물"이란 에어필립이 정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을 말한다.
22. "수하물표"란 전적으로 위탁수하물의 식별만을 위하여 운송인에 의하여 발행된 증표로서 위탁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확인표와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청구표로 구성된다.
23. "탑승수속(체크인, CHECK-IN)"이란 항공사에서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하는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좌석 배정, 탑승권 제공, 수하물 위탁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4. "탑승수속 마감시간"이란 여객이 탑승수속과 탑승권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 항공사에 의해 정하여진 시간을 말한다.
25. "탑승권(보딩패스)"이란 여객이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증표이며, 탑승구에서 탑승권을 제시해야 항공편을 탑승할 수 있다.
26. "단체 여객"이란 동시에 동일구간을 여행하는 10명 이상의 여객으로 사전에 동일단체로 예약이 신청된 여객을 말한다.
27. "일(日)"이란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일수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경우에 당해 통지일은 일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효기간의 산정을 위한 경우에는 항공권 발행일 또는 여행 개시일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8. "소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9. "유아"란 할인 목적을 위한 만 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0. "왕복 여행"이란 왕편 및 복편 운임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으로 여행하고 왕편과 동일한 항공로를 통하여 출발지점에 복귀하는 여행, 또는 한 지점으로부터 타 지점에 여행하되 왕편과 상이한 항공로로 출발지점에 복귀하되 왕편 및 복편에 동일한 통상직행 편도운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1. "일주 여행"이란 한 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일주하는 항공로를 이용하여 동 출발지점에 돌아오는 여행을 말한다.
32. "오픈-쥬 (Open-jaw) 여행"이란 근본적으로 왕복 여행의 성격을 가진 여행이지만, 출발지국 내의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상이하거나 타국 내의 도착지점과 출발지점

이 상이한 여행 또는 위 4개 지점이 모두 상이한 경우의 여행을 말한다.

33. "목적지"란 운송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말한다. 왕복 또는 일주 여행 시의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지점이 된다.
34. "도중체류"란 여행의 중단과 동의어로서 운송인의 사전 합의 하에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여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35. "선불항공권통지(PTA : PREPAID TICKET ADVICE)"란 어떤 지역 거주자가 선불한 항공권을 타 지역 거주자에게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상업용 전신 또는 우편에 의한 통지를 말하며, 항공사는 적용 태리프에 의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6. "손해"란 항공운송이나 그에 부수하여 운송인이 행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손해도 포함한다.
37. "결과적 손해"란 휴대품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 지연 등의 결과로 초래되어 여객이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손해 및 기타 입증 가능한 손해를 말한다.
38. "증가요금"이란 위탁수하물의 파손이나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그 가치를 에어필립에 신고할 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39.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을 말한다.
40. "프랑스 골드프랑"이란 순도 1000분의 900의 금 65.5 밀리그램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프랑을 말한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총칙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의 어떠한 규정도 협약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2. 적용

본 운송약관은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또한 전적으로 에어필립의 국내운송약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공시된 운임, 요율 및 요금으로 에어필립에 의하여 수행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 및 이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3. 무상 운송

무상 운송에 관하여는 에어필립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한 권리를 보유한다. 단, 그러한 적용의 배제는 법령, 정부규정, 명령(협약 포함)을 위배할 수는 없다.

4. 전세 운송 계약

에어필립과의 전세운송계약에 따라 행하는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당해 전세운송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전세운송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송약관을 적용한다. 여객은 전세운송계약에 의한 운송을 수락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어필립과의 전세운송계약 당사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전세운송계약 및 본 운송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효력

모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를 따른다.

6. 예고없는 변경

적용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및 지시, 서비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는 사전에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송약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 전 발권한 여객에게는 변경된 운송약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항 공 권

1. 총칙

여객이 적용 운임을 지불하지 않거나, 에어필립의 신용거래 조건에 따르지 않는 한, 에어필립은 항공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운송을 하지않는다.

2. 항공권의 유효성

-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 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에 표시된다.
-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 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 다. 탑승용 쿠폰 상의 예약 등급(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기록(Passenger Name Record: PNR) 상의 예약 등급은 일치하여야 한다. 상기 예약 등급이 상이한 경우,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정해진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 라. MCO/EMD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다. MCO/EMD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 마. 항공권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24시까지이다. 적용 약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 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 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EMD는 제1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3. 항공권의 유효기간 연장

가. 상기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임의 추징 없이 다음과 같이 연장될 수 있다.

1) 아래의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30일까지

가) 에어필립이 당해 유효기간 중에 여객의 좌석이 예약되어 있는 항공편을 취소 또는 지연한 경우

나) 에어필립이 여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서 지정된 지점에 기항하지 아니한 경우

다) 에어필립이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한 경우

라) 에어필립 사정에 의하여 여객이 타 항공편에 접속되지 못한 경우

마) 에어필립이 객실 등급을 변경한 경우

바) 에어필립이 사전에 예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을 소지한 여객이 예약을 요청할 시 좌석 예약이 불가능할 경우, 당해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7일까지

나. 질병으로 인한 여행 중단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여객이 여행 개시 후 임신을 제외한 발병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 에어필립은 건강 진단서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게 되는 날까지 또는 그러한 날로부터 운임이 지불된 등급에 탑승이 가능하며, 여행이 재개되는 지점 또는 최종 접속 지점을 출발하는 첫 항공편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권의 잔여 탑승용 쿠폰이 1개 지점 이상의 도중 체류지를 포함할 경우에, 당해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당해 건강 진단서 상에 표시된 여행 가능일자로부터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필립은 환자를 실제로 동반하는 자의 항공권 유효기간도 동일하게 연장한다.

다. 여객이 여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 당해 여객의 동반 직계가족 또는 기타 동반자의 항공권 유효기간은 사망일로부터 45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라. 최단 체류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 1)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직계가족에 대한, 또는
- 2) 여행 중 사망한 여객의 기타 실제 동반자에 대한 최단 체류 요건은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의 제출 시 유보된다.

마. 최단 체류 요건의 적용을 받는 특별운임 항공권 소지 여객이 자신이 동반하지 않은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하나 당해 사망 증명서 또는 동 사본을 즉각 제시하지 못할 경우, 당해 여객은 자신의 여행 중에 당해 가족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망 증명서를 추후 제출할 시 최단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여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추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바. 최단 체류 요건이 적용되는 특별운임으로 판매된 항공권의 경우,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진단서에 의해 증명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최단 체류 기간 이전에 복편 여행을 개시하고자 할 시, 당해 최단 체류 기간은 유보된다. 당해 여객은 지불된 특별운임으로 복편 여행을 할 수 있다. "EARLY RETURN ACCOUNT ILLNESS OF(여객 성명)"이라고 항공권 상에 이서 되어야 한다. 동 진단서 사본은 최소한 2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4. 탑승용 쿠폰의 사용 순서 및 사용

가. 구입한 항공권은 항공권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출발지에서 합의된 도중 체류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한해 유효하다. 여객이 지불한 운임은 적용 테리프를 근거로 하며 항공권 상에 명시된 운송을 위한 것이다. 동 사항은 여객과의 계약상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항공권상에 명시된 순서대로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항공권은 운송을 위해 접수될 수 없으며, 환불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

나. 여객이 여정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에어필립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여객은 새로운 여정을 위해 다시 계산된 운임을 지불하거나 또는 원래 여정에 따라 여행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정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에어필립과 협의하여야 하며, 에어필립이 발행한 항공권에 한해 에어필립은 운임의 재계산 없이 중간 기착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탑승용 쿠폰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송 이전 미사용 쿠폰은 환불 또는 무효로 처리된다.

다. 에어필립과 합의 없이 여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객의 실제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을 부과한다. 여객은 이미 지불한 운임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전체 운임의 차액을 에어필

립에 지불하여야 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운임이 낮을 경우 에어필립은 차액을 환불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여객의 미사용 쿠폰은 가치가 없다.

- 라. 변경의 종류에 대해서 운임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출발지를 변경하거나 (예를 들어 첫번째 구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여정의 방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불 금액은 인상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임은 항공권 상에 지정된 날짜와 항공편에 대해서 유효하며 변경이 불가하거나, 추가 요금 지불 조건하에 변경이 가능하다.
- 마.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탑승용 쿠폰은 여객용 쿠폰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여객이 여객용 쿠폰, 탑승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사의 규정에 맞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필립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전자 항공권인 경우에는 여객은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고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되어져 있는 유효한 항공권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필립은 운송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5. 항공권의 불지참, 분실 또는 특이사례

에어필립은 유효한 항공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항공권 또는 동 권의 유효한 탑승용 쿠폰의 분실 또는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여행 당일의 유효한 운임으로 별도의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는 한 당해 항공권 또는 동권의 탑승용 쿠폰상의 구간에 대한 운송은 제공되지 아니한다. 항공권의 일부분이 손상된 경우, 운송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거나 삭제된 항공권의 경우 또는 여객용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과 함께 제시하지 아니하는 항공권의 경우에는 에어필립은 그러한 항공권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분실 사실에 대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고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에어필립은 여객 요청에 따라 신항공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에어필립이 입을지도 모르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서도 에어필립이 정한 형식에 의거, 여객이 에어필립을 면책할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항공권을 발행한다.

6. 비 양도성

- 가.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 나. 일부 또는 전체 환불 불가 조건으로 할인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이 판매될 수 있으며, 여객은 자신의 여행 조건에 적합한 운임을 선택하여야 한다. 여객은 당해 항공권을 취소하여야 할 경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하여야 한다.
- 다. 상기 "나" 호에 언급된 항공권을 일부분도 사용하지 않고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객이 동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조건하에서 에어필립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동일인에 의한 향후 여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라.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에어필립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에어필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에어필립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4 조 도중 체류

1. 도중 체류의 허용

가. 운송인의 태리프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도중 체류는 여하한 착륙 예정지에서도 허용된다.

나. 특별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 소지 여객에 대한 도중 체류는, 에어필립 태리프에 규정된 제한, 금지 또는 추가 도중 체류 요금 사항에 따른다.

2. 도중 체류의 사전 조치

도중 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하여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 5 조 운임, 요금 및 경로

1. 적용 운임 및 요금

- 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운송약관 및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 운송에 적용할 운임 및 요금은 에어필립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공권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여행을 위한 운임이 지급된 당일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운임 및 요금이 상기 적용 운임 또는 요금과 상이할 경우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 나. 공시 운임은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 간이나, 공항으로부터 시내까지의 지상 운송에 대하여는 별도 요금을 추징한다. 단, 적용 태리프에 당해 지상 운송 요금의 추징 없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여객 요청에 따른 여정 변경 시, 여정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또는 요금에 따라 승객의 운임 또는 요금을 재 계산한다.
- 라.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직행 운임은 동일 지점 간의 동일 등급에 적용되는 구간운임을 합산한 운임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마.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적용 태리프에 공시된 운임은 동 운임이 적용되는 등급의 좌석 1개를 여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사전에 2개의 좌석을 예약하는 경우에는 적용 운임의 2배를 징수한다.

2. 미 공시 운임의 산출

어느 2개 지점 간에 운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구성, 산출한다.

3. 경로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운임은 양방향에 적용되며 운임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 한하여 적용된다. 동일 운임으로 여행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경로가 있을 경우 항공권 발행 전에 여객이 경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항공권에 예약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다. 경로가 특별히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 필립이 그 경로를 결정할 수가 있다.

4. 운임 및 요금의 지불

가. 지불 통화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 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필립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와 기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 있다.

나. 적용 환율

적용 태리프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공시 운임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에어필립이 설정한 환율을 사용한다.

제 6 조 경로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연결 불능

1. 여객 요청에 따른 변경

가. 에어필립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미사용 항공권,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에 기재된 경로(출발지 제외), 운송인, 객실 등급, 목적지, 운임 또는 유효기간 등의 변경을 새로운 항공권으로 발행하거나 이서하므로써 완료된다.

- 1) 에어필립이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를 최초로 발행한 경우
- 2) 경로 변경이 시작되는 최초 구간의 운송을 위하여 미 사용 탑승용 쿠폰 또는 MCO/EMD의 "운송인" 란에 최초 운송인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단, 이 경우 당해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이 변경되는 구간 일부 구간의 운송인으로서 지정되어 있고 여객이 변경을 요청한 지점에 그 운송인의 영업소 또는 그로부터 이서권을 위임받은 총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에어필립은 당해 발행 운송인으로부터 이서를 받아야 한다.
- 3) 에어필립이 당해 변경을 행할 권리를 가진 운송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전보로 그러한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나. 경로 변경의 결과로 적용 운임 및 요금이 변경된 경우, 당해 신운임 및 요금은 적용 테리프에 정한 바에 따라서 산출한다.

다. 선불항공권 통지에 의하여 발행된 항공권 또는 MCO/EMD의 경우, 이서의 권한은 항공권 또는 MCO/EMD를 발행하는 운송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선불항공권 통지를 발행한 운송인에 있다.

라. 경로 변경에 의해 발행된 신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최초 항공권 또는 MCO/EMD에 적용되던 유효기간이 계속 적용된다.

2.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경로 변경

가. 에어필립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운항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나, 여객의 항공권 상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체류지에 기착하지 못하거나, 사전에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8조 제3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운송을 거절 당한 경우 에어필립은 다음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취한다.

- 1) 좌석 제공이 가능한 에어필립의 타 항공편으로 운송하거나
 - 2) 경로 변경을 위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타 항공사 또는 타 운송기관에 이서하거나
 - 3) 여객을 경로 변경하여 항공권 또는 유효한 쿠폰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에어필립이 운송 구간 또는 타 운송 기관에 의하여 운송하거나,
 - 4)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한다.
- 나.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인이 운항시간표대로 운항하지 못했거나 또는 당해 항공편의 운항 시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객이 좌석 예약이 되어 있는 에어필립의 접속 항공편에 탑승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여객을 운송한 운송인이 여객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에어필립은 당해 접속 불능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7 조 예 약

1. 총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권 및 해당 탑승용 쿠폰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 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 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 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예약의 조건

가. 특정 항공권에 대한 좌석의 예약은 당해 좌석의 예약이 에어필립의 예약직원에게 의해 확인되어, 해당 확약된 좌석의 기록이 에어필립의 예약 시스템 내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유효하다. 여객이 에어필립이 정하는 시간까지 예약된 좌석에 대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에어필립은 사전 통고 없이 당해 예약을 취소한다.

나. 사전 배정 좌석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필립은 항공기 내 특정 좌석의 배정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3. 예약의 재확인

가. 계속 여행 구간 또는 왕복 구간의 예약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에어필립은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재확인 시한과 방법, 장소를 여객에게 통보한다. 여객이 예약 재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계속편 또는 왕복편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에어필립은 여객이 계속 여행을 원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있는 경우 당해 예약을 재사용하여 운송하고,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여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나.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이 포함될 경우 그 구간의 예약 재확인 필요 여부는 여객이 직접 타 운송인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예약 재확인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항공권에 해당 항공편의 운송인으로 지정된 항공사에 예약 재확인을 하여야 한다.

4. 통신비

예약에 관한 여객의 특별 요청에 따라 에어필립이 지불했거나, 청구받은 전화, 전보, 무선 전신 등의 통신비는 당해 여객이 부담한다.

5. 예약의 취소

가. 예약 확약된 항공편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 에어필립은 여객의 왕복편 또는 계속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여객이 사전 통보를 하는 경우 에어필립은 계속되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기록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에어필립은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 없이 여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 1) 탑승 구간 및 탑승 일자가 동일한 경우
- 2) 탑승 구간이 동일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 일자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상기 1) 및 2) 경우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모두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

가. 본인 사정으로 인해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에어필립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하여야 한다.

나.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시각 이전에 상기 "가" 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에어필립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 1)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가" 항의 취소 통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탑승 수속 후 탑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어필립이 별도로 규정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징수한다.
- 2) 여객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위약금을 각각 징수한다.

7. 개인 정보

여객이나 여객의 대리인은 항공편 예약이나 기타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여객의 개인 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를 에어필립에 제공하여야 한다. 에어필립에 제공된 여객의 개인 정보는 여객이 요청한 항공편 예약, 기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에어필립이 판단하는 경우 에어필립 지점/대리점, 타 항공사, 제휴사, 서비스 제공사로 제공될 수 있으며,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제 8 조 운송의 제한

1. 동반자 없는 소아 및 유아의 운송

같은 객실 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소아 및 유아는 그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유아의 운송

최초 여정이 시작된 이후 생후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여야 하며 그 운임은 적용 가능한 소아운임을 징수한다.

3. 운송거절, 예약취소 또는 강제하기

가. 에어필립은 특정 여객에게 운송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여객에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나. 에어필립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다음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거나 도중에서 여객을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 1) 당해 조치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
- 2) 당해 조치가 출발지국, 도착지국 또는 경유지국의 적용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 3) 여객이 통과지 국가, 또는 서류가 미비된 국가에 입국 시도 목적으로 여행 서류를 파기, 변경, 위조하거나, 확인증 발급 조건으로 에어필립이 보관을 위하여 요구하는 여행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4) 여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육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 가) 에어필립의 특별취급이 필요한 경우
 - 나) 타 여객에 불안을 초래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자신, 타 여객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5) 에어필립의 요구를 받고도 자신의 신분을 명백히 밝히기를 거절하는 경우
- 6) 폭발물, 무기류, 기타 위험물품 소지나 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신체 또는 소유물의 검색을 거절하는 경우
- 7)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이 타 여객이나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8) 여객이 이전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부당 행위를 하고, 에어필립이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 9)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에어필립 또는 대리점 이외의 자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 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다. 에어필립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탑승 가능한 여객 수가 제한될 경우, 에어필립은 자발적으로 탑승 유예의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없어 비자발적 탑승유예의 여객이 발생한 경우, 에어필립이 정한 규정에 따라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등의 순으로 탑승유예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이 경우 유아를 동반한 승객,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는 선정되지 않는다. 비자발적 탑승유예자 중 위에서 언급한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제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송불이행 항목에 준하여 보상한다.

4. 조건부 운송 인수

- 가. 에어필립은, 여객의 상태,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 하거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러한 상태, 연령,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서 적용 태리프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을 행한다.
- 나. 심신미약자, 질환자, 임산부 등에 대한 운송 시, 해당 여객에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하여 에어필립과 사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장애인 여객의 경우, 장애 사실과 운송에 필요한 특별 요청사항을 에어필립에 통보하여 운송이 결정된 이후에는 해당 장애나 특별 요청사항으로 인해 후속 운송이 거절되지 아니한다. 또한 장애인 여객의 경우, 에어필립에 통보한 바에 따라 여객에게 필요

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도움의 내용은 관련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5. 기내에서의 행위

가. 에어필립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조치(신체 억류 포함)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운항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여행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2) 흡연
-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5)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14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6) 항공기, 탑승객 또는 탑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 7)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8)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9) 이외 기장, 승무원이 판단하기에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나. 위의 "가"호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담한다.

6. 전자기기

에어필립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휴대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조종 장난감, 송수신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부정 탑승

에어필립은 무효항공권, 위조항공권, 타인명의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하거나, 국내선 여객운임 할인대상자로 부정 신고하여 운임의 특별할인을 받고 탑승한 경우 부정탑승행위로 규정하고 탑승구간에 적용되는 통상운임의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제 9 조 수 하 물

1. 수하물의 운송

위탁수하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 탑재량 관계 또는 기타 에어필립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객의 동의 하에 당해 수하물을 탑재 가능한 타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2. 수하물 내용조사

에어필립은 항공 보안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모든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 3자의 입회하에 검사할 수 있다.

3. 수하물로서 운송이 제한되는 물품

가. 에어필립이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 1)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이동이 금지된 물품
- 2) 항공기 탑승인원 또는 기타 재산상 위험이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3) 운송 중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나. 화폐, 은행권, 유가증권, 인지류, 보석류, 미술품, 골동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4.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

가. 위탁수하물은 일인당 15킬로그램(33lb) 까지를 무료로 운송한다.

나. 기내 반입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에 한하여 삼면이 합이 75cm(각 면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 35cm 세로 25cm 높이 15cm)이내이고 중량 8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하여 여객이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

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무료휴대가 가능하며, 상기의 규격, 중량 및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위탁수화물로 취급한다.

다. 해당 구간 통상운임의 75%를 지불한 유아(좌석구매 시) 또는 소아에 대하여도 제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10 킬로그램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의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마.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 동일 항공편,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하며, 개수에 상관없이 총 무게 합산이 가능하다.

바.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구간 및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5. 기내 무료 휴대품

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하여 여객의 전적인 보관과 책임 하에 제4항 "나" 호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

- 1) 핸드백, 지갑, 소형 서류가방 1 개
- 2) 소량의 독서물
- 3) 외투, 덮개 혹은 모포
- 4) 소형카메라, 쌍안경
- 5)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 6) 끝이 뾰족하지 않은 우산, 지팡이
- 7) 목발 또는 의수, 의족 등의 보조기구

8) 노트북 컴퓨터 및 보관용 가방

나. 제5항 “가”호의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법령, 정부기관 명령 또는 에어필립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6. 초과수하물 요금

가. 본 운송약관 제9조 제4항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나.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절사한다.

7. 초과수하물 요금의 환불

가. 여객이 당해 항공편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수하물 운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객이 지불한 초과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상기 제7항 “가”호에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수하물 운송을 취소할 경우에는 초과수하물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에어필립 사정에 의하여 여객과의 운송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특정 동물의 운송

가. 시각장애인 인도견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무료로 운송한다.

- 1) 여객이 동반하되, 별도의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타 여객에게 불편감을 주거나 안전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운송 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에어필립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에어필립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4) 당해 동물의 운송으로 인하여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여객이 전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나. 상기 제8항 "가"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동반하는 애완용 동물은 당사 항공기 제원 (ERJ-145) 상 탑승 및 예약이 제한된다.

9. 종가요금

가. 여객은 수하물 및 기타 소지품의 가격이 제17조 제3항 제"사"호 2목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그 가격을 사전에 신고할 수 있다.

나. 여객이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할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 제"사"호 2목의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10,000원당 또는 그 단수 액에 대하여 50원(부가가치세 불 포함)의 요율로 증가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1인당 신고가격이 2,500,000원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0. 종가요금의 환불

가. 에어필립의 사정으로 운송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 개시 전에 여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종가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11. 위탁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수하물은 에어필립이 발행한 수하물표가 에어필립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한다.

나. 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만,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다. 에어필립에서는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 에어필립이 본 조항에 의하여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12. 수하물표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에어필립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다.

13. 미 인도 수하물 처분

수하물 도착 후 2주일 경과 후에도 여객으로부터 인도의 요구가 없는 수하물의 경우 에어필립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10 조 항공편의 스케줄 지연 및 취소

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증되는 것이 아니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에어필립은 항공편 접속에 대하여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에어필립은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표시 상의 오기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운항에 관한 에어필립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진술 또는 표시도 에어필립을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에어필립은 항공권 발권시 고객에게 예약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운항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이 연락처를 에어필립에 제공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문자전송, 전자메일,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이 경우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변경 후 미고지 등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의 미 도달로 인한 고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에어필립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운항시간이 변경되었으나 고객이 수용하지 않고, 에어필립이 고객의 수용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제11조 제3항에 따라 환불한다.

2. 취 소

가. 에어필립은 예고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변경 대체할 수 있다.

나. 에어필립은 아래와 같은 경우 예고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변경, 연기 또는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필립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 사용 부분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에어필립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에어필립은 관련 약관 규정, 태리프 및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하에 있지 않은 사실(기상조건, 천재지변,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금지, 전쟁, 적대 행위, 동란 또는 국제관계의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지연, 요구 조건, 사태 또는 지시

- 2) 예측, 예기 또는 예지하지 못한 사실
- 3) 정부의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지시
-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에어필립 또는 타사 인력 어려움 등의 경우

다. 여객이 에어필립이 요청한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거절하거나, 또는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 요청된 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에어필립은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권 또는 후속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필립은 본 운송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불한 운임 및 요금의 미 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 11 조 환 불

1. 총 칙

미 사용 항공권, 그 쿠폰 또는 MCO/EMD의 에어필립에 의한 환불은 하기 제5항에서 정하는 바 이외에는 아래 조건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당해 항공권 또는 MCO/EMD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이후 환불이 신청되는 경우에 에어필립은 동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신청하는 자는 항공권의 모든 미사용 쿠폰 또는 MCO/EMD를 에어필립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에 여객으로서 성명이 기재된 자에게 행한다.

1) 항공권 또는 MCO/EMD가 하기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가) 유니버설 에어 트래블 플랜(Universal Air Travel Plan: 이하 "UATP"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에어 트래블 카드(Air Travel Card)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나) 정부 운송 청구서(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이하 "GTR" 이라 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GTR을 발행한 정부 기관에

다) 크레딧 카드(Credit Card)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크레딧 카드에 명기된 자의 구좌에

라. 환불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상에 기재 또는 지정된 명의인, 회사 또는 대리점임을 표명하는 자에게 본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에어필립은 이후 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또 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마. 출국 의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정부 기관 또는 에어필립에 제출된 항공권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당해 여객이 당해 국가 체재 허가를 받았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기타 교통편에 의하여 출국할 것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2. 통 화

환불은 항공권 또는 MCO/EMD가 최초로 구입된 국가 및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령,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행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환불은 운임 지불 시 사용한 통화, 한국 또는 환불이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정 통화, 또는 항공권 또는 MCO/EMD가 구입된 국가의 통화로서 운임이 당초 징수된 통화 금액에 상당하는 액으로 하되, 한국 내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 법정통화인 한화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항공편의 취소, 예약된 좌석의 에어필립에 의한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기 또는 지연, 예정된 도중 체류지의 생략 또는 제8조 제3항에 정한 조건에 의한 운송 거절로 인하여 여객이 그의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운송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환불을 말한다.

나.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환불 시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1)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한 운임의 전액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의거 산출한다.

가) 운송이 중단된 지점으로부터 항공권에 기재된 목적지나 도중 체류지 또는 운송이 재개된 지점까지의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편도운임(왕복 또는 일주여행 항공권의 경우에는 왕복 운임의 반액) 및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당초 운임 계산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에는 적용된 할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나) 지불한 운임과 운송된 구간의 운임과의 차액

4.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가. 본 항에서 말하는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 이란 상기 제3항 “가”호에서 말한 “에어필립 사정에 의한 환불” 외의 항공권 또는 MCO/EMD의 환불을 말한다.

나. 여객 사정에 의한 환불시 환불액은 아래와 같다.

- 1) 항공권을 일부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불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의 적용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에서 적용 가능한 서비스 수수료 또는 위약금을 공제한 차액

다. 항공권의 일부를 환불함으로써 당해 항공권의 운송이 금지된 지점간에 사용된 결과가 될 경우의 환불 금액은, 당해 항공권이 에어필립의 운항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지점까지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여 상기 "나" 호 2) 에 의거 결정한다.

5. 분실 항공권

분실 항공권 또는 그 미 사용 부분에 대한 환불은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환불 신청은 분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에 행해져야 한다. 환불은 환불되기 전까지 당해 분실 항공권 또는 쿠폰이 타인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환불 또는 재발행되지 않았어야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당해 환불을 행함으로써 또는 사후에 당해 분실 항공권이 운송, 환불, 기타 사용을 위해서 제시됨으로써 에어필립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이에만 국한되지 않음) 손실, 손상, 손해, 배상 청구 또는 기타 비용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에어필립을 면책하게하며, 여객 스스로가 에어필립에 대해서 배상한다는 조건에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나. 환불은 여객이 분실을 증명하는 만족할 만한 증거를 에어필립에 제시하고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1) 항공권이 일부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여객이 당해 항공권 구입을 위하여 지불한 운임을 환불한다. 단, 여객이 상이한 조건으로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 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2)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가) 여객이 대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된 운임 총액과 항공권이 실제로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요금의 총액과의 차액

나) 여객이 분실 항공권과 동일한 등급, 유효기간, 여정, 발행 조건으로 별도의 대체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 태리프 규정에 의거 환불 금액을 산출하여 환불한다.

3) 상기 1) 및 2) 의 규정에 의한 환불은 당해 분실의 결과로 에어필립이 부담한 모든 비용을 여객이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 에어필립 또는 대리인이 항공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실한 경우 에어필립이 항공권 재발행 또는 환불 책임을 진다.

라. 본항의 규정은 분실된 MCO/EMD에도 적용된다.

제 12 조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 부도 수수료

1. 사전 취소

본인 사정으로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 하려는 여객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시간 이전에 에어필립에 확약 취소를 통고 하여야 한다.

2. 예약 부도 수수료 징수

가. 당해 항공편의 출발 예정 시각 이전에 상기 제1항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경우, 에어필립이 규정한 예약부도 수수료를 징수한다.

나. 본인 사정으로 항공편을 사전 취소하지 않은 경우 환불 위약금과 예약 부도 수수료를 각각 징수한다.

제 13 조 지상운송서비스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에어필립은 공항 지역 내, 공항과 공항간 또는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 운송수단을 보유, 운행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지상 운송 수단이 에어필립에 의해 직접 운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운송은 에어필립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아니며 그렇게 간주될 수도 없는 독립된 업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당해 지상 운송수단의 수배를 위해 여객을 돕는 과정에서 에어필립의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행하는 여하한 행위도 당해 독립된 운행 업체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에어필립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필립이 여객을 위하여 당해 지상 운송 수단을 보유하고 운행하는 경우,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영수표 및 수하물 가격에 대한 협약에 표기 또는 언급된 것을 포함하여 에어필립의 운송 조건, 규정 등은 당해 지상 운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상기의 경우, 여객이 지상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에어필립은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숙박 및 기내식

1. 숙 박

가. 숙박비는 여객 운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직행편의 스케줄에 따른 숙박 또는 여타 체류 시 에어필립은 그의 재량에 따라 여객의 숙박비를 부담할 수 있다.

다.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에어필립은 여객을 대신하여 숙박 시설에 대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당해 예약의 확실한 이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에어필립 또는 그 대리인이 예약을 위한 수배 또는 조치 과정에서 발행하는 모든 비용은 여객의 부담으로 한다.

2. 기내식

에어필립의 사정에 따라 기내식은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 되며 일부 노선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3. 에어필립에 의한 알선

여객의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의 알선 행위에 있어서 에어필립은 이에 요하는 비용이 에어필립 부담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필립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 행위함에 불과하다. 여객에 의한 당해 숙박시설의 사용 결과로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에어필립 이외의 제 3자(타인, 회사 또는 관계 당국)가 여객에 대하여 사용을 거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과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공시 운임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에어필립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 등 기타 요금도 또한 같다. 항공권 발행 후 새로운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승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6 조 출입국 수속

1. 법령의 준수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요구, 여행 요건 및 에어필립의 규정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의 취득과 관련하여,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의 준수와 관련하여, 에어필립의 직원이나 대리점이 여객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제공한 조언 또는 안내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여객이 당해 서류를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당해 법령, 규정, 명령, 요구, 요건 또는 지시를 준수하지 못해서 여객에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에어필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여권 및 사증

가. 여객은 관계국의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일체의 출입국 서류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어필립은 적용 법령,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르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된 여객의 운송을 거절한다. 에어필립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여객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필립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여객은 에어필립에 대하여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경유지국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여객의 입국 불허로 인하여 에어필립이 정부의 명령에 의거 여객을 그의 출발지 또는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적용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객은 송환에 관련된 적용 운임을 에어필립에 지불하여야 한다. 미탑승 구간의 운송을 위해 여객이 에어필립에 지불한 금액 또는 에어필립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 소유의 금전을 에어필립은 당해 운임의 지불에 사용한다. 입국 거절 또는 추방 지점에서의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은 환불되지 않는다.

3. 세관 검사

여객은 세관과 기타 정부 관리의 요구에 따라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의 검사에 참관하여야 한다. 에어필립은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여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객이 본 조건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에어필립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은 당해 손해를 에어필립에 배상하여야 한다.

4. 정부의 규정

에어필립이 적용 법령, 정부 규정, 요구, 명령 또는 요건에 의거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고 선의로 타당한 결정을 하여 여객 운송을 거절한 경우 에어필립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운송인의 책임

1. 승계(연결) 운송인

1개 항공권 또는 그와 연결하여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운송인이 접속하여 행하는 운송은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2. 적용 법규

가. 본 약관에 의한 국제 운송은,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 또는 협약에 정의된 이외의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의된 국제 운송인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 상기 "가" 호에서 정하는 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에어필립이 행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에 따른다.

- 1) 적용 법령(협약을 시행하는 국내법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국제 운송"이 아닌 운송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제법 포함), 정부의 규정, 명령 및 지시
- 2) 에어필립의 영업소 및 에어필립 정기편이 운항되고 있는 공항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는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 기타 제 규정 및 시간표(단, 동 시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발, 도착 시간 그 자체는 포함되지 않음)

다. 운송인의 명칭은 항공권상에 약어로 표기될 수 있으며 운송인의 주소는 항공권에 운송인의 최초 약어 명칭과 동일한 행에 표시된 출발지 공항이다. "협약"의 목적상 합의된 도중 기착지란, 항공권 및 동 항공권과 연결되어 발행된 연결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한 지점, 또는 여객의 경로상 계획된 도중 착륙지로서 운송인의 운항 시간표에 표기된 지점이다. 각 운송인의 정식 명칭과 약어 명칭은 적용 태리프에 포함되어 있다.

3. 책임한도의 포기 및 구상권의 보유

협약 또는 기타 적용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에어필립의 책임은 아래와 같다.

- 가. 운송 또는 그에 부수하여 에어필립이 행하는 기타 서비스로부터 또는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상해, 지연, 분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질의 배상 청구(이하 본 운송 약 관에서는 "손해"라 총칭한다)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그 손해가 에어필립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외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에어필립은 에어필립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휴대 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필립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
- 다. 에어필립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에어필립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라. 에어필립에 의해 행하여진 운송과 관련하여, 제삼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가 아닌 에어필립의 승객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에어필립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른 책임한도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 2) 에어필립은 여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상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13,100 SDR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상기 1), 2)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에어필립은 소송상의 청구이거나 소송 이외의 청구이거나를 불문하고 협약에서 정하여진 일체의 권리를 가진다. 또한 에어필립은 제삼자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구상권을 보유한다.
 - 4) 미국지역의 미국 사회보장기관 (U.S. Social Agencies)를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기관 또는 기타 유사기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5) SDR로 표시된 금액을 각국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일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당해 통화와의 환율을 적용한다.
- 마. 상기 라목 1),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손해를 야기하여 여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상해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대리하여, 또는 그 사람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협약 및 기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바. 여객의 지연에 대한 에어필립의 책임은 여하한 경우에도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사. 수하물의 지연 혹은 파손, 분실의 경우 에어필립의 책임 한도는 아래와 같다.
- 1) 아래 2) 호 이외의 운송의 경우 위탁수하물은 킬로그램당 25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20불), 휴대 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5,000 프랑스 골드프랑 또는 그 상당액(미화 약 400불)로 한다. 여객에 대하여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를 인도하는 경우, 또는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미인도 부분 또는 손해 부분에 관한 에어필립의 책임은 그 위탁 수하물의 부분 또는 내용품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중량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산출한다.
 - 2)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에 에어필립의 책임한도는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에 대해 1인당 1,131 SDR로 한다.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휴대 수하물의 경우, 운송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에 기인하였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 3) 여객이 사전에 상기 책임한도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적용 태리프에 의거 증가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에어필립의 책임 한도는 당해 높은 신고 가격으로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에어필립은 여객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시에는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 아. 에어필립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에어필립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할 경우, 당해 여객은 이에 따라 에어필립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에어필립에 배상하여야 한다.
- 자.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캠코더, 카메라, MP3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은제품, 유가증권, 증

권, 기타 귀중품, 서류 또는 견본의 분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에어필립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에어필립은 이 약관의 규정상 수하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위탁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에어필립에 인도되어 에어필립이 접수한 그러한 물품은 수하물 가격 및 책임 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또한 에어필립의 공시요율 및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카. 에어필립이 타 운송인의 노선상의 운송을 위하여 항공권을 발행 하거나 수하물을 위탁 받는 경우, 에어필립은 당해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하는 것이다. 에어필립은 에어필립 노선 이외에서 발생한 여객의 사망, 상해, 지연 또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에어필립 노선 이외에서 발생하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에어필립이 운송계약상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에 당해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에 따라 여객은 에어필립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타. 본 운송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행하는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는 특별 손해에 대하여 에어필립이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에어필립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본 약관 및 적용 태리프에 설정된 에어필립의 면책 또는 책임 한도에 관한 제반 규정은 에어필립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그리고, 운송을 위해 에어필립이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종업원 및 대표자 전원에게도 적용된다.

4. 제소 원인

여객 및 수하물 운송과 관련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든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든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이든지, 그 청구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협약에 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손해 배상 청구권자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8 조 손해배상 청구기한 및 제소기한

1. 손해배상 청구기한

수하물의 파손 또는 부분 분실의 경우, 여객은 손상을 발견한 즉시 또는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 지연 또는 분실의 경우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필립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여하한 손해 배상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모든 이의는 상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운송이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운송"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자가 아래 사항을 증명할 때에는 당해 이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

가. 당해 통지가 정당한(합리적인) 이유로 불가능했다.

나. 에어필립의 사기에 의하여 당해 통지가 불가능했다.

다. 에어필립이 여객의 수하물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

2. 제소 기한

에어필립에 대한 책임에 관련한 제소는 도착한 날로부터, 항공기가 도착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에어필립에 대한 여객의 제소권은 소멸된다.

제 19 조 법령 우선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에 정하는 규정이 법령, 정부의 규정, 명령 또는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에 본 규정은 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어느 규정이 무효로 되어도 타 조항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제 20 조 수정 및 포기

에어필립의 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대표자는 운송계약, 본 약관 또는 기타 적용 태리프의 여하한 규정도 변경 또는 수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제 21 조 약관의 정본

본 약관은 영문판으로 번역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거나 분쟁이 야기될 시는 국문판 약관의 해석에 따른다.